

#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09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6년 4월 21일

제안자 : 이기동 의원외 4인

## □ 수정이유

○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자격을 보다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

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

## □ 주요골자

○ 안 제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함

- 지방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

○ 안 제5조 제2항 제5호 중 “관련분야의”를 삭제하고, “3년”을 “4년”으로 함.

○ 안 제5조 제2항 “제4호”를 “제3호”로, “제5호”를 “제4호”로, “제6호”를 “제5호”로 함

#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5조 제2항 제3호 : 지방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 
근무한 사람

안 제5조 제2항 제5호 중 “관련분야의”를 삭제하고, “3년”을 “4년”  
으로 한다.

안 제5조 제2항 “제4호”를 “제3호”로, “제5호”를 “제4호”로,  
“제6호”를 “제5호”로 한다.

# 수정안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<b>제5조(원장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 - 2.(생략)</p> <p>3. 지방의료원에서 부장이상의 직위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관련분야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</u></p> <p>6. (생략)</p>	<p><b>제5조(원장) ① (개정안과 같음)</b></p> <p>② .....</p> <p>.....</p> <p>1. - 2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 (개정안 4호와 같음)</p> <p>4. <u>4급이상 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사람</u></p> <p>5. (개정안 6호와 같음)</p>